

2021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

- 학적변동 기간 : 2021년 2월 1일(월) ~ 2월 25일(화) 오후 4시까지
-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(기간 엄수) *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
-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

※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

방법	학적변동	학적변동기간	내용
인터넷 신청 가능 항목	휴학 및 복학	2월 1일(월)~25일(목) 오후 4시까지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휴·복학 신청(대학원) - 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,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-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(단, 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은 가능)
	지도교수 변경	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지도교수 변경신청 *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
	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	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- 수료이후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
	신입생 지도교수 신청	3월 2일(화)~5일(금) 오후 4시까지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지도교수 신청 - 지도교수 미신청시 '연구지도' 이수 불가
	석·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(조기수료)	3월 2일(화)~19일(금) 오후 4시까지	- 포털시스템(KUPID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수업연한 단축신청 -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- 2학기 단축(6학기 초 신청), 1학기 단축(7학기 초 신청) 신청기간에 신청 *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
학과로 원서 제출	자퇴 및 재입학	* 재입학 신청기간 : 2월 1일(월)~10일(수) 오후4시까지	- 자퇴원서(양식), 재입학원서(양식)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 -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
	전공변경	2월 1일(월)~25일(화) 오후 4시까지	- 전공변경허가원(양식) 작성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 -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
	[석사과정] 학·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(조기수료)	3월 2일(화)~19일(금) 오후 4시까지	- 학·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(양식)에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 -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- 1학기 단축(3학기 초 신청) 신청기간에 신청 *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
	석·박사통합과정 [수료생]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	2월 1일(월)~19일(금) 오후4시까지	-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 -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

□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

■ 수료학점

※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해야함

과정	교과학점	연구지도	비고
석사	24	8	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
박사	36	8	
석·박사통합	54	16(12)	
석사	24	8	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
박사	<u>30</u>	8	
석·박사통합	<u>48</u>	16(12)	

() :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

■ 재학연한

<단위 : 년>	수업연한	휴학기간	재학연한	비고
석사	2	2	6	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
박사	2	3	10	
석·박사통합	4(3)	3	12	
석사	2	2	<u>4</u>	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
박사	2	3	<u>8</u>	
석·박사통합	4(3)	3	<u>10</u>	

() :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

□ 2021학년도 1학기 변경사항 안내

구분		변경 전	변경 후					
휴학	창업휴학	-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	-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불가 -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					
	기관근무 및 연수휴학	-	- 신설 *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					
학·석사 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(조기수료)	단축 신청	-	- 학·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: 3학기 초 신청 기간에 학·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 1학기(6개월) 수업연한 단축을 할 수 있음					
	단축 요건	- 수업연한은 2년 이상, 교과학점 24학점 이상, 연구 지도 학점 6학점 이상 취득 - 평점평균 3.0 이상	- 좌동 -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(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)의 전체 평균평점이 4.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및 졸업가능 * 평균평점 4.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대상</th> <th>평균평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9학년도 후기 학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</td> <td>3.0 이상</td> </tr> <tr> <td>2020학년도 후기 학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</td> <td>4.0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	평균평점	2019학년도 후기 학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	3.0 이상	2020학년도 후기 학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
대상	평균평점							
2019학년도 후기 학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	3.0 이상							
2020학년도 후기 학·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	4.0 이상							

휴학 및 복학

*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(단, 출산휴학, 육아휴학, 군입대휴학은 가능)

1. 신청기간 : 2월 1일(월) ~ 25일(목) 16:00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
*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·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1년 3월 2일에 변동됨

2. 방법 : KUPID(<http://portal.korea.ac.kr>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휴·복학 신청(대학원)

3. 휴학 종류

휴학 종류	신청가능 학기단위	재학연한 포함여부	휴학기간 포함여부	증빙서류	비고
군입대휴학	6학기	×	×	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	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임신·출산 휴학	1학기~ 2학기	×	×	임신진단서 (45일 이내 발급분) 혹은 출산증명서 (45일 이내 발급분)	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남학생 신청 불가 -최장 1년
육아휴학	1학기~ 2학기	×	×	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	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만8세이하 자녀에 해당 -최장 1년
창업휴학	1학기	×	×	-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[별첨1] -사업자등록증 (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 필수 제출) -사업계획서[별첨2] -창업유관부서 추천서 [별첨3-1]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[별첨 3-2/*필수] -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-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	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인터넷 신청불가(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) -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-최장 2년 휴학 가능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,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-신청자격, 제출서류, [별첨]서식 : KUPD→규정/학칙→「창업휴학운영지침」 참조
기관근무 및 연수휴학	1학기~ 2학기	×	×	-재직/연수증명서, -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, 학과내규 (재직/연수증명서 소속 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 회 개최하여 심의함)	-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- 인터넷 신청불가(학과행정실 서류접수) - 최장 2년 휴학 가능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) - 재직/연수증명서 : 기관명, 소속부서, 직위, 재직/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-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고시합격자 연수휴학	1학기	○	×	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	-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-인터넷 신청불가(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) -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
일반휴학	1학기~ 2학기	○	○	없음	

* 증빙서류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

1) 군입대휴학

-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,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
- 구비서류: (입대일 기재된)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
(병무청 발송 E-mail 포함)

2) 임신·출산휴학

- '임신진단서(45일 이내 발급분)'나 '출산증명서(45일 이내 발급분)'를 첨부하여 신청함
-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3) 육아휴학

- '가족관계증명서'나 '주민등록등본'을 첨부하여 신청함
-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4) 창업휴학

- 제출자격 :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 - * 「창업휴학운영지침」 제4조(창업 휴학 신청자격)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(창업 휴학 제출서류) 제출서류 구비
- 구비서류 :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[별첨1], 사업자등록증(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), 사업계획서[별첨2],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[별첨3-1]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[별첨3-2/*필수],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,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
 - *별첨 서식 : KUPID → (좌측)빠른서비스 → 규정/학칙 → 「창업휴학운영지침」 참조
- 최장 2년 휴학 가능(한번에 2년 신청 불가,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)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5) 기관근무및연수휴학

- 구비서류 : 기관명, 소속부서, 직위, 재직/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/연수증명서
-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
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최장 2년 휴학 가능(한번에 2년 신청 불가)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6) 일반휴학

- 석사2년, 박사(석·박사통합) 3년까지 가능하며,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
-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
-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
- 수료생 :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(일반)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
 다만, 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, 창업휴학,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

4. 복학 종류

복학 종류	증빙서류	비고
군제대복학	(제대일이 기재된)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	-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(예시)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.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. 단,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년 2월에는 일반휴학(전역증 사본이 필요함)원을 제출하여야 함 -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「KUPID(http://portal.korea.ac.kr) / 정보생활 / 예비군 전입신고」 에서 필히 신청 * 증빙서류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
일반복학	없음	- 내국인
	'여권' 사본 1부	- 외국인 학생 :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
5. 휴/복학예정 확인서 발급

- 발급 기간 : 2월 1일(월) ~ 2월 25일(목) 16:00까지
-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/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/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→ [제증명]에서 '휴/복학예정 확인서' 발급 가능(예정)
- 학기개시일(3월 1일, 9월 1일)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'휴/복학증명서' 출력 가능

자퇴 및 재입학 신청

1. 자퇴

-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***자퇴일: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**
- 등록금 환불
 - ① 납부 후 3월 15일(월) 16시까지 자퇴원 제출시 신/편입생은 입학금 제외한 수업료 전액,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
 - ② 3월 16일(화)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
 - 3월 31일(수) 16시까지 소속학과행정실 방문 제출 : 수업료 5/6 반환

2. 재입학

- 신청기간 : 2월 1일(월) ~ 10일(수) 16:00 ***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**
-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- 자퇴, 미등록,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**1회**에 한하여 허가 함
-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(석사:6년, 박사:10년, 통합:12년)으로 함
*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: 석사6년, 박사 10년, 통합12년
- **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**
-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
-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**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**

재학생 지도교수 변경

1. 신청기간 : 2월 1일(월) ~ 25일(목) 16:00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2. KUPID(<http://portal.korea.ac.kr>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지도교수 변경신청
3. **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(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)**
4. 학.연.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,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함

전공 변경

1. 신청기간 : 2월 1일(월) ~ 25일(목) 16:00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2. 전공변경허가원(양식)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(학과)로 제출
3. **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**
4. **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(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)**

신입생 지도교수 신청

1. 신청기간: 3월 2일(화) ~ 5일(금) 16:00
2. KUPID(<http://portal.korea.ac.kr>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지도교수 신청
3. **지도교수 미신청시 '연구지도' 이수 불가**
*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'연구지도' 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

[석사과정]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(조기수료)

1. 대상 : 학·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생
2. 신청기간 : 3월 2일(화) ~ 19일(금) 16:00
※ 등록(등록금납부)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
※ **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(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)**
3. 방법 : 학.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(양식)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(인터넷 신청 불가)
* 2021년 2학기부터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예정
4. 학기 : 단축범위는 1학기로 함
- **1학기 단축 : 3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신청**
※ 단, 3학기(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)의 전체 **평균평점이 4.0이상**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
* 평균평점 4.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.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

대상	평균평점
2019학년도 후기 학.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	3.0 이상
2020학년도 후기 학.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	4.0 이상

5. 수업연한 단축신청(조기수료)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(조기수료) '취소' 처리됨
(예시) 2021년 1학기에 수업연한 1학기 단축(3학기 초)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년 8월 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'취소' 처리됨

석.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(조기수료)

1.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

- 가. 신청기간 : 2월 1일(화) ~ 25일(목) 16:00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- 나. 방법 : KUPID(http://portal.korea.ac.kr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
- 다. 석·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
 - 1) 단,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
 - 2)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하여 선발 함 (예시) 2021년 1학기 학적변동기간(2021.2.1~2.25)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제출한 학생은 2021년 8월 25일 수료임
- 라. **수료이후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**

2. 수업연한 단축신청(조기 수료)

- 가. 신청기간 : 3월 2일(화) ~ 19일(금) 16:00
 - ※ 등록(등록금납부)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
 - ※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(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)
- 나. 방법 : KUPID(http://portal.korea.ac.kr) → 학적/졸업 → 학적사항 → 수업연한 단축신청
- 다. 학기 : 단축범위는 2학기(1년) 또는 1학기로 함
 - 2학기 단축 : 6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
 - 1학기 단축 : 7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
 - ※ 단, 6학기 또는 7학기(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)의 전체 평균평점이 4.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
- 라. 수업연한 단축신청(조기수료)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(조기수료) '취소' 처리됨
 - (예시) 2021년 1학기에 수업연한 2학기 단축(6학기 초)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년 8월 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'취소' 처리됨. 해당 학생은 2021년 2학기에 7학기 정규등록을 해야하며 한학기 단축(7학기 초 신청) 신청할 경우 승인시 수업연한 한학기 단축됨. 2021년 2학기에 한학기 단축(7학기 초 신청) 미신청할 경우 2022년 1학기에 8학기 정규등록해야함

석.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

- 1. 신청기간 : 2월 1일(월) ~ 19일(금) 16:00 *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
- 2. 방법 :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(학과)로 방문 제출(인터넷 신청 불가)
- 3. 대상
 -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
 - 석·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년(10년)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
 - * 재학연한 12년(10년) :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(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)
- 4. 석사학위논문제출
 -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
 -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등)을 충족한 수료생
 -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

학위과정	석.박사통합과정
취득학위	석사
제증명 발급	석사 학위 / 석.박사통합과정 수료

등록금 납부(KUPID 학사일정 : 재무부 공고 참조)

1. 정규 등록 기간 : 2월 19일(금) 09:00 ~ 2월 25일(목) 16:00
- KUPID(<http://portal.korea.ac.kr>) → 등록/장학 → 등록금고지서 →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
2. 최종 등록 기간 : 3월 11일(목) ~ 3월 15일(월) 16:00
※ 등록기간 엄수(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)

복학예정자 수강신청

1. 기간 : 2월 17일(수) 13:00 ~ 19일(금) 12:00
2. 방법 : <http://sugang.korea.ac.kr/graduate/> 로그인 후 신청
-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(단, 2021년 2월 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)

2021. 1.

대학원행정팀